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2022. 1.



김 귀 화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김귀화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어서 안 제18조에서는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을
- 안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회계처리의 특례 및 의장이 달서구 청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2년 1월 26일부터 2022년 2월 7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김귀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822008
----------	----------

발의일자: 2022. 1. 26.

발의자: 김귀화,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홍복조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대구 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적용범위(안 제3조)
- 다.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안 제4조)
- 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및 운영(안 제5조 및 제6조)
- 마.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4조)
- 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 사.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안 제18조)
- 아. 회계처리의 특례 및 달서구청장과 협의하여 통합 운영(안 제19조 및 제20조)

3. 참고사항

-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 나. 관계법령 등
 - 1) 「지방자치법」 제103조
 - 2)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조 및 제77조
 - 3) 2021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행정안전부)
-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5.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각종 동호회 운영 및 문화·체육 활동 지원

3. 본인 및 가족이 치료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4.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

5.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6.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및 체험 지원

7. 건강검진비 지원

8. 휴양시설 이용을 위한 경비 지원

9. 본인 및 가족 장례 시 장례용품 등 지원

10.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매점·휴게실 등

2.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

②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콘도·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 운영)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각종 후생복지 사업은 가급적 맞춤형 복지제도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진·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소속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복지점수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의회의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3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복지카드의 사용)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의회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소속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8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 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 발하여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통합 운영)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5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영 중인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 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2021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2021년)

3

지방공무원의 종류

문제 구분

- 지방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법 제2조)
 -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있으면 제31조, 제31조제1항,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 및 제82조의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정부차장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장관사무) 및 제51조(당연미족) 규정을 적용

가. 경력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 행정·기술·관리운영직(임용령 별표 1)

- 계급구조 : 1~9급
 - 직군·직렬구조 : 3개 직군, 46개 직렬, 105개 직류

○ 연구·지도직(연구·지도직규정 별표 1)

- 연구직
 - 계급구조 : 연구관, 연구사
 - 직군·직렬구조 : 2개 직군, 12개 직렬, 43개 직류
 - 직위구분 : 연구관에 대하여는 기관의 장인 연구관, 무서의 장인 연구관, 그 밖의 연구관으로 나누고 이를 임용권자, 보직요건, 처우 등 인사관리 기준으로 적용
- 지도직
 - 계급구조 : 지도관, 지도사
 - 직군·직렬구조 : 1개 직군, 2개 직렬, 12개 직류
 - 직위구분 : 지도관에 대하여도 연구관의 경우와 같이 직위 구분하여 인사관리 기준으로 적용

【일반직공무원 중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전문경력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 계급 구분 및 직군·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으며, 직무의 특성·난이도·속도 등에 따라 직위군으로 구분(가군, 나군, 다군)
- 직위 지정 : 해당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평판하거나 장기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의 직위

【일반직공무원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임용령 제3조의2)

-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업무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정직적 공무원
- 종류 :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
- 계급구조
 - 일반임기제공무원 :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명칭 부여
 - 전문임기제공무원 : 가급 ~ 나급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가급 ~ 미급
 - 한시임기제공무원 : 제5호 ~ 제9호

(2) 특정직공무원

○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 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계급·임용 등에 대하여 개별법(특별법)으로 규정

-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의 경우에도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나. 특수경력직공무원

(1) 정무직공무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또는 고도의 청탁질책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범령 또는 주례에서 정무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 장
 - 범령 또는 주례에서 지정하는 공무원
 - 서울특별시 행정 1·2부시장 및 정무부시장(「지방자치법」 제1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시장 2인(도지사가 후보등록시 행정 시장으로 예고한 경우에 한함)
 -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정무부지사(정무부시장)는 일정직공무원(1급 상당)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범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범령 또는 주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유사하게 계급분류는 하고 있으나(1~9급 상당) 승진, 전보, 전직, 강임, 견임 등 실직주의에 의한 인사관리나 휴직(질병·병역·행방불명·유아·가사휴직은 제외), 직위해제, 소청 등 신분보장 같은 적용되지 않음

1) 공무원 직종 연혁	
○ 공직분류	
- 수직적으로 '재급', 수평적으로는 '직종' 구분	
• 재급 : 업무·관료도·책임도 기준	
• 직종 : 실체주의와 신분보장 기준	
○ 공직분류 '직종' 연혁	
- 1949년 : 일반직, 별정직(현행 정무직·특정직 성격 직종 포함) 구분	
- 1965년 : 일반직 중에서 기능직 분리	
- 1973년 :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원(1년 계약) 세도 신설	
- 1981년 : 현행과 같은 방식 직종별화 확립	